##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7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황정아·조계원·박용갑

서영석 • 박범계 • 이광희

최민희・김 현・김 윤

이재관 • 문금주 • 주철현

모경종 • 박희승 • 이정헌

김주영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률은 생존을 위한 기본 필수조건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다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매우 부족하고, 이와 같은 전세사기 등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인천지법 2023고단1562 판결).

이에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 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죄를"을 "죄(이하 "특정재산범죄"라 한다)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 제3조제1항의 특정재산 범죄(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경합범(「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을 포함한다)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산액"이라 한다)이 5 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 경 우에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합산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 합산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3. 합산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	①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	
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	
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	
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u>죄를</u>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	하 "특정재산범죄"라 한다)를-
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	
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	
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3조의2(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 제3조제1항의 특
	정재산범죄(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합범(「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을 포함한다)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산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가중처벌한다. 이 경우에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합산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 합산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3. 합산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정역